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248
----------	-------

발의연월일 : 2024. 1. 10.

발 의 자 : 이병훈 · 김철민 · 이형석
한정애 · 이장섭 · 조오섭
민형배 · 주철현 · 전재수
이개호 · 허 영 · 홍성국
한준호 · 송갑석 · 윤영덕
김희재 · 전해숙 · 박 정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실시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실제 주소지가 아닌 요금청구서 발송지를 기반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이용자에 대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정당 등에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요금청구서 발송지만 해당 지역으로 변경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부여받아 당내경선이나 선거여론조사에 불법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해당 지역의 기지국 접속 이력을

확인하여 1개월 이내의 접속 정보가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 따른 벌칙규정을 두어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8제5항 및 제7항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8제5항 본문 중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를 “이용자의 해당 지역의 기지국(「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접속 이력을 확인하여 1개월 이내의 접속 정보가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이용자의 해당 지역의 기지국 접속 이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거나 1개월 이내의 해당 지역 기지국 접속 정보가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256조제3항제1호하목 중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또는 제57조의8제7항제7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해당 지역의 기지국 접속 이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거나 1개월 이내의 해당 지역 기지국 접속 정보가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한 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대전화 가상번호 생성·제공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7조의8제1항 또는 제108조의2제2항에 따라 정당 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 ④ (생 략)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 청서에 따라 <u>휴대전화 가상번 호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설 정한 다음 관할 선거관리위원 회를 경유하여 해당 정당에 제 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 사업자는 이용자 수의 부족 등 으로 제공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가 제공하여야 하 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 보다 적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휴 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조정할</u>	⑤ ----- ----- ----- ----- -----이용자의 해당 지 역의 기지국(「전파법」 제2조 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접속 이력을 확인하여 1개월 이내의 접속 정보가 있는 이용 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생성하여----- ----- ----- ----- ----- ----- ----- -----

제25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選舉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 파. (생략)

하. 제57조의8제7항제1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당내경선의 선거일까지의 기간, 여론수렴 기간 또는 여론조사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요청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25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 -----

가. ~ 파. (현행과 같음)

하.

수를 초과하여 <u>휴대전화</u> <u>가상번호를 제공한 자</u> 거.·너. (생략) 2. ~ 4. (생략) ④·⑤ (생략)	-----<u>휴대전화</u> <u>가상번호를 제공한 자</u> 또 는 <u>제57조의8제7항제7호</u> <u>(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u> <u>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u>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해</u> <u>당 지역의 기지국 접속 이</u> <u>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u> <u>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u> <u>하여 제공하거나 1개월 이</u> <u>내의 해당 지역 기지국 접</u> <u>속 정보가 없는 이용자를</u> <u>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u> <u>호를 생성하여 제공한 자</u> 거.·너.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	---